



행정안전부

행 정 안 전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원자재 가격 급등 관련 지방정부 계약집행 요령 안내

1. 지방계약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귀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2. 최근 중동전쟁으로 인한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지방정부와의 계약에서 계약상대자의 부담이 우려되어 관련된 지방정부 계약집행 요령을 안내하오니, 계약담당자께서는 하단의 내용을 숙지하셔서 계약상대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시·도 및 시·도 교육청에서는 동 내용을 시·군·구, 교육지원청, 지방공기업, 지방출자출연기관 등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자재 가격 급등 관련 지방계약 집행요령 >

구 분	내 용	비 고
계약기간 연장 및 실비 지급, 지연배상금 산정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관급자재의 조달 지연이나 사급자재의 구입 곤란 등으로 지연된 경우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연장에 따른 현장유지비 등 추가 비용은 실비 반영 ▶ 위의 사유로 계약이 지체된 경우는 해당 지체일수는 지연배상금 산정시 제외 	법 § 22, 30, 영 § 75조의 2, 90 계약집행기준(예규) 제9장 제8절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체결 후 90일이 지나고 품목·지수조정률이 3% 이상 증가한 경우 계약금액 증액 조정 ▶ 공사계약에서 입찰일을 기준으로 특정규격의 자재(순공사의비)의 0.5% 이상인 자재에 적용)의 가격증감률이 10% 이상인 경우 동 자재에 대해 계약금액 조정 ▶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90일 이내인 경우*에도 계약금액을 조정 가능 * 자재구매 가격이 5% 이상 증가시, 품목·지수조정률이 3%(물품구매계약은 6%) 이상 상승 등 	법 § 22, 영 § 73, 계약집행기준(예규) 제7장 제7절, 9장 제7절

끝.

행정안전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재무과장), 부산광역시장(회계재산담당관장), 대구광역시장(회계과장), 인천광역시장(회계담당관), 광주광역시장(회계과장), 대전광역시장(회계재산과장), 울산광역시장(회계과장), 세종특별자치시장(회계과장), 경기도지사(회계과장), 강원특별자치도지사(회계과장), 충청북도지사(회계과장), 충청남도지사(운영지원과장), 전북특별자치도지사(회계과장), 전라남도지사(회계과장), 경상북도지사(회계관리과장), 경상남도지사(회계과장), 제주특별자치도회계재산관리과장, 서울특별시교육감(교육재정과), 부산광역시교육감(재정과장), 대구광역시교육감(회계정보과장), 인천광역시교육감(교육재정과장), 광주광역시교육감(재정과장), 대전광역시교육감(재정과장), 울산광역시교육감(재정부지과장),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재무행정과장), 경기도교육감(재무관리과장),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행정과장), 충청북도교육감(재정부지과장), 충청남도교육감(재무과장),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재무과장), 전라남도교육감(재정과장), 경상북도교육감(재무과장), 경상남도교육감(재정과장),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예산재정과장)

주무관 **설창환** 행정사무관 대결 2026. 4. 6.
홍성권

협조자

시행 회계계약제도과-2264 (2026. 4. 6.) 접수 재무과-17571 (2026. 4. 6.)

우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 www.mois.go.kr

전화 044-205-3784 /전송 044-204-8967 / seol83@mail.go.kr / 대국민 공개